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광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제정이유

- 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도민에 대한 균등한 독서 교육 기회 제공 및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5조)
-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.(안 제6조)
- 도내 도서관은 도민의 시설이용 등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협력하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)
-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, 독서실적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함 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지적 능력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첫째, 안 제4조에서는 도민에 대한 균등한 독서 교육 기회 제공 및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,
 - 둘째,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,
 - 셋째, 안 제6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,
 - 넷째, 안 제7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대한 도내 도서관의 협력을,
 - 다섯째, 안 제8조에서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, 독서실적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음.
- 이와 같이 금번 제정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·시행, 독서 교육의 기회 균등 제공 및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독서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등 「독서문화 진흥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, 법령의 위배사항이 없고, 도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안 1부. 끝.